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도서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

[시행 2021.12.15] (제정) 2021.12.15 훈령 제397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금정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: 519-59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도서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"부설주차장"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에 설치된 지하1층 옥 내주차장을 말한다.

제3조(관리방법)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도서관 부설주차장(이하 "주차장"이라 한다)은 금정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주차장관리・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장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・감독한다.

제4조(운영시간)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구청장은 주차수요 등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- 1. 화요일~금요일: 09:00~22:00
- 2. 토요일·일요일: 09:00~17:00
- ②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도서관 휴관일에는 주차장을 폐쇄한다.
-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주차요금) ①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한다.

- ② 주차요금은 입차 후 최초 30분은 무료이고, 이후 10분마다 1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4,7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차량의 주차요금은 월 정기주차 20,000원으로 한다.
- 1. 도서관에 근무하는 소속직원
- 2. 도서관 시설물 위탁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
- 3. 도서관에 입주한 업체의 직원

제6조(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)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.

-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 차량
- 2. 도서관에 입주(대관)한 기관 또는 업체의 업무용 차량
- 3. 공식행사 또는 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
- 4. 언론 기관 소속 취재 차량
- 5. 도서관과 계약된 업체의 업무용 차량
- 6. 그 밖에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
- ② 문화교실 강사 및 회원의 경우 3시간을 면제하여 주차요금을 부과 징수한다.
-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대상은 「부산광역시 금정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」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감면요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적용하며, 요금 감면을 원하는 자는 감면요금 적용 시간 내에 감면 요청을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및 감면받으려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주차요금 징수) ① 주차장 사용 및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인식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주차시간에 따라 카드로 징수한다.

② 월정기권은 등록 시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하고 환불은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.

제8조(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)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은 금한다.
- 2.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, 주차와 관련하여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3.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하며,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도난 및 분실 등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 다
- 4. 장애인,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를 금지한다.
- 5.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고 손해 배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9조(주차장 사용제한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. 이용자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
- 2. 도서관의 휴관일일 경우
- 3.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
- 4.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
- 5. 행사, 공사, 천재지변, 사고 등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
- 6.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
- 7. 대형차량 등 차량 구조상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한 경우
- 8.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제 운행 미이행 차량인 경우
- 9.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 제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.

제10조(출차거부)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

- 1.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
- 2. 사고를 일으키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
- 3. 그 밖에 출차 거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부칙<훈령 제397호, 2021.12.15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